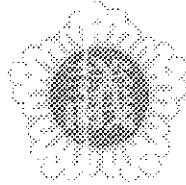


제225회 임시회  
2004. 4. 2. (금)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

2003. 4. 2.(금)

기획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4년 3월 16일

○ 회부일자 : 2004년 3월 18일

다. 상정일자 :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2004. 3. 29 :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 
심사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정원을 추가로 책정 받아 자체 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앙권한사무의 지방이양 및 도정현안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고,
- 소방항공대 및 파출소 신설에 따른 소방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증원하려는 일반분야 44명의 인력배치 계획과 필요성, 소방항공대 창설에 따른 항공대 시설의 건설과 관리 운영계획, 그리고, 소방헬기구입 추진상황과 격납고, 정비실 등 건설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**

**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**

**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음”**

#### **8. 기타 필요한 사항**

- 소방본부의 소방항공대 신설에 따른 증원 8명은 미리 채용하여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, 항공기 제작 검수 및 교육훈련일정 등을 감안하여 사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함.

#### **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**
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증원하려는 일반분야 44명의 인력배치 계획과 필요성,  
소방항공대 창설에 따른 항공대 시설의 건설과 관리 운영계획,  
그리고, 소방헬기구입 추진상황과 격납고, 정비실 등  
건설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**

**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**

**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음”**

#### **8. 기타 필요한 사항**

- 소방본부의 소방항공대 신설에 따른 증원 8명은  
미리 채용하여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,  
항공기 제작 검수 및 교육훈련일정 등을 감안하여 사전 충분히  
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증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함.

#### **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**
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

##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4년    월    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정원을 추가로 책정받아 자체 조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중앙권한사무의 지방이양 및 도정현안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고,
- 소방항공대 및 파출소 신설에 따른 소방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: 2,391명 ⇒ 2,465명 (증74명)
 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324명 ⇒ 1,366명 (증42명)
  - 소방기관의 정원 : 97명 ⇒ 99명 (증2명)
 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56명 ⇒ 58명 (증 2명)
  - 교육공무원의 정원 : 변동없음

의안전문 : 따로 붙임

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관계법령 발취 : 따로 붙임

##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“2,391명”을 “2,465명”으로 하고, 동조 제1호중 “1,324명”을 “1,366명”으로 하며, 동조 제2호중 “967명”을 “997명”으로 하고, 동조 제4호중 “56명”을 “58명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2,391명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324명</u></p> <p>2. 소방본부·소방서에 두는 정원 : <u>967명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u>56명</u></p>	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.....                  ..... <u>2,465명</u> .....                  .....</p> <p>1. .... : <u>1,366명</u></p> <p>2. .... : <u>997명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.... : <u>58명</u></p>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지방자치법

**제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**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- ⑤ (생략)

### □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
**제21조 (정원의 규정)**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1. 집행기관의 정원
2. 본청·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- ④ (생략)